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3,419,372	16,302,581
일반회계	500,427,632	15,012,829
특별회계	42,991,740	1,289,752
공기업특별회계	36,260,344	1,087,81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446,305	463,38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814,039	624,421
기타특별회계	6,731,396	201,942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726,576	21,797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17,548	54,526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367,102	41,013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509,562	75,28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10,608	9,31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07,773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